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12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황정아·조인철·박정현

문금주 • 노종면 • 김남근

주철현 · 김 현 · 김영환

박용갑・조계원・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환자 비율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사적 간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37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2023년말 기준 제공 병상 수는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간병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는 연령은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그 연령에 1세를, 2028년 1월 1일부터는 2세를, 2029년 1월 1일부터는 3세를, 2030년 1월 1일부터는 4세를, 2031년 1월 1일부터는 5세를 각각 뺀 연령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
	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
	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
	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